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99

발의연월일: 2021. 3. 11.

발 의 자: 박주민·강득구·강민정

김승원 · 김진애 · 김회재

남인순 · 심상정 · 양정숙

용혜인 · 이탄희 · 정청래

최혜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자유롭게 이동·통행할 권리는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, 경제활동 등 사회적 기회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.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인 또는 신체적인 장애, 고령에 의한 신체기능 저하 등 개인적인 부자유로움으로 인해 공공 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.

'교통약자법'의 제정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28.4%에 불과함. 또한 시외·고속·전세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임.

이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, 장거리 노선버

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,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, 장거리 버스,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 제한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여야 함(안 제14조제7항 신설).
- 나.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 하며 도입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- 다.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, 이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(안 제14조의3신설).
- 라. 시장이나 군수가 시·군·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, 시·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·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함(안 제16조제2항·제3항 및 제6항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 제한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 도입) ① 「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외버스운송사업의 운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장거리 노선버스 운 송사업자"라 한다)는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.
 - ②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등의 도입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의3(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) 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전세버스 운송사업자"라 한다)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

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한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설치할 수 있다"를 "설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설치할 수 있다"를 "설치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"를 "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	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
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
	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
	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
	차의 차령 제한에 따른 대폐차
	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
	선 교체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14조의2(장거리 노선버스의 저
	<u>상버스등 도입) ① 「여객자동</u>
	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
	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
	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의
	운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
	"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"
	라 한다)는 해당 노선에 저상
	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.
	②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
	자의 저상버스등의 도입 및 운
	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
	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4조의3(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) 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전세버스 운송사업자"라 한다)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 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 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- ③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 (2) -----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 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. 하여야 한다.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(3) ----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 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 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 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설치하여야 한다. ④·⑤ (생 략) 4·5 (현행과 같음) ⑥ 국가 또는 도(道)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 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 ---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자

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
(7) · (8) (현행과 같음)

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·⑧ (생 략)